

2021년도 제2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8. 2.(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9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27건(안건번호 제2021-92345호~9373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92345호는 현재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되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92346호, 92347호는 특정 제품의 판매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제품 상세페이지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92348호, 92349호는 복제 및 전송의 목적,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92350호~92380호는 합법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1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0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9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저작물명, 게시물 작성일자 등 민원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2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92345호~9373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92345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해외 사이트의 파일 공유 URL을 이용하여 장편소설의 오디오북을 제공 중인 사안임.

게시자는 해외 파일 공유 사이트에 해당 저작물의 압축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 뒤,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하여 원천게시물의 직접 링크 (direct link)를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는 본문을 통해 위 압축 파일의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면서, 댓글을 통한 비밀번호 공유를 허용하였음. 실제로 댓글에서는 위 압축 파일의 비밀번호를 공유 중인 사실이 확인됨.

원천게시물을 통해 제공되는 저작물은 장편소설 ☆☆☆☆☆의 오디오북으로, ○○○○.○○.○○ ●●●●●에서 발행하였음. 8,000원에 구매가 가능함.

다만 2021. 7. 28.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9234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직접 링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그러함. 1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임.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사이트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링크게시물이 불법복제물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A 위원: 링크에는 직접 링크, 임베디드 링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모든 링크게시물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님. 링크로 연결된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링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원천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인 경우 저작권법 침해 방조에 해당함. 반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저작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임.

- A 위원: 원천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링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방조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 B 위원: 말씀하신 부분 역시 1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바 있음. 일반인들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링크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게시자의 자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시정권고 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C 위원: 해당 안전처럼 본인이 올린 글을 원천게시물로 하여 링크게시물을 작성하여도 방조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과 링크게시물의 게시자가 동일하다면, 사안의 직접 링크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다만 링크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금번 사안과 같은 링크 행위에 대한 판례가 없으므로 가장 유사한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음.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방조 행위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임. 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
- A 위원: 앞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본인이 원천게시물을 작성한 후 링크하는 것은 타인의 불법복제물을 링크하는 것보다 불법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임,
- D 위원: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현재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되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E 위원: 같은 의견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나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92345호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92346호, 9234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민원인이 특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온라인 쇼핑몰 ★★의 판매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은 각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편집저작물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92346호, 923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E 위원: 해당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 절차는 완료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민원인이 제출한 저작권등록증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였음.
- B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시정권고 판단에 있어 시장 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고려하고 있음.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용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해당 이미지의 합법 시장 존재 여부 자체가 의문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이미지 자체를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하고 있으나 제품판매 게시물 내 사진 이미지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바 있음.
- E 위원: 제품판매 게시물에 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는 일관된 입장

을 견지해 온 것으로 보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증 제출
만으로는 기존의 심의위원회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C 위원: 제품 상세페이지는 특정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
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
기도 어려움.
- D 위원: 같은 의견임.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
될 수 있어, 해당 안전과 같은 경우 권리자(민원인)가 직접 민·형사
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92346호, 92347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
호 제2021-92348호, 9234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
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 또는 일부 분량을 우리말 더빙하여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불법복제된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
는 사실은 분명하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92348호, 9234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D 위원: 지난주 논의되었던 사안과 동일함. 전문적으로 제작된 합법 시장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 위원: 동의함. 복제 및 전송의 목적,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결하는 것이 타당한 건임.
-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92348호, 92349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92350호~92380호는 3명의 민원인이 각각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출판물, 만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92381호~9373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

상품,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토탈워: 삼국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92391호는 불법복제물의 분할 압축파일을 3,720포인트에 판매 중임. 해당 저작물은 2019. 5. 23. 출시된 게임으로 정가는 59,800원 임.

(영화 '알라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92554호는 2019. 5. 23. 개봉한 실사 영화로, 자막을 포함하여 245포인트에 판매 중임.

(방송 '대탈출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93661호는 최신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2021. 7. 18. 방영분을 95포인트에 판매 중임.

이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92350호~9373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92350호~9373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92345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92346호~92349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92350호~9373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2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2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